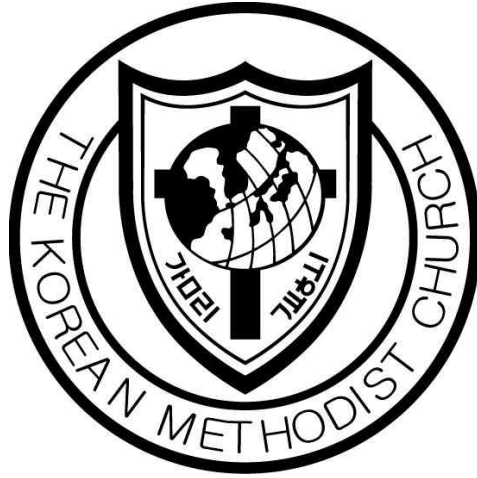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 감시원 교육



일 시 : 2022년 5월 12일(목) 오후 2시

장 소 : 본부 교회(16층)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 감시원 교육

- * 일시 : 2022년 5월 12일(목) 오후 2시
- * 장소 : 본부교회(16층)
- * 사회 : 이승근 관리분과위원장

* 찬 송 440장(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다 같 이

1.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함께 가려네
 예수함께 아니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3. 어둔 그늘 나를 에워 쌀 때에 주가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 후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함께 가려네**

* 기 도 김명동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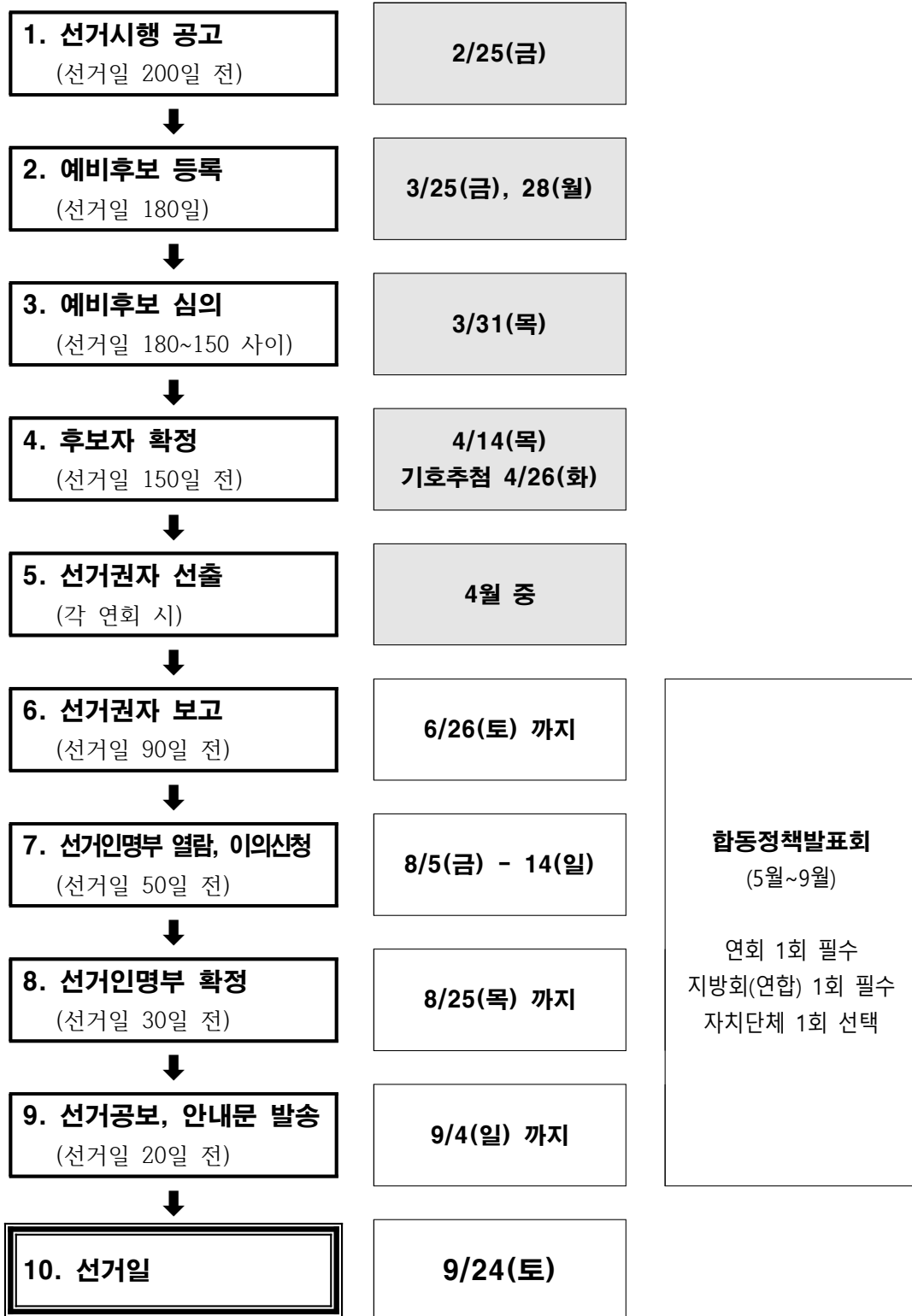
* 교 육 이승근 관리분과위원장

연회	감시원	연회	감시원
서울	최성철 목사	동부	양광수 목사
	이선중 장로		임영규 장로
	노명재 목사		박재성 목사
	이기서 장로		연병익 장로
	정필교 목사		박종석 목사
	이희원 장로	박한순 장로	
서울남	임예길 목사	충북	박민경 목사
	김대현 장로		한연기 장로
	이종춘 목사		류대환 목사
	엄윤희 장로	이장호 장로	
중부	한영종 목사	남부	민경덕 목사
	방준영 장로		김양신 장로
	이재범 목사		이용기 목사
	현관섭 장로		한우동 장로
	권태봉 목사		이희중 목사
	김종훈 장로	서상교 장로	
경기	박정규 목사	충청	장영욱 목사
	송용섭 장로		최민태 장로
	이기석 목사		김연수 목사
	호정기 장로		정경윤 장로

감독 선거 후보자 명단

연회	기호	성명	지방	교회
서울	1	김성복	성동광진	꽃재
	2	표순환	중구용산	서대문중앙
	3	이용원	도봉	영천
서울남	1	유병용	송파	브니엘
	2	채성기	구로	오류동
중부	1	박찬일	강화동	삼성
	2	김찬호	강화동	은혜
	3	유학열	부천시	시온성
경기	1	송광섭	안산동	만족
	2	박장규	동탄	동탄
중앙	1	한종우	구리	하늘샘
동부	1	김영민	강릉남	강남
	2	손학균	춘천남	춘천석사
충북	1	백종준	영동	영동
	2	박정민	제천시	시온성
남부	1	전석범	대전동	가양
	2	윤애근	공주	공주제일
	3	김동현	대전동	제자들
충청	1	박인호	대천시	대천제일
	2	김성선	당진서	삼봉
	3	엄재용	천안서남	천안
삼남	1	정동준	부산서	동래온천
호남특별	1	김필수	군산	비전

선거일정



교리와 장정(2021년)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1 장 총 칙

【1601】 제1조(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6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감독·감독회장 선거라 함은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와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규정에 의한 감독·감독회장의 선거를 말한다.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 총회 6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개정>

- ①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에 후보자 예비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신설>
- ②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③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해당 연회 선거관리위원회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선포한다.
- ④ 감독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자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한다.
- ⑤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에는 재선거한다.
- ⑥ 감독이나 감독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 재선거를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1604】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 ① 선관위는 각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과 감독회장이 선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연회에 연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회 선관위')를 둔다.
- ③ 연회 선관위는 해당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16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개정>
- ② 감독회장은 교역자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부터 총회까지로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⑥ 감독 또는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지방회의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후보자와 관계된 심의, 표결 등 기타 영향을 줄 수 있는 회무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 ⑦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주도 투표분소의 선거관리를 위해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임시 선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606】 제6조(관장사항)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선거의 계획과 공고
 - 2. 선관위 홈페이지의 운영
 - 3.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
 - 4. 투표 및 개표 방법 결정 및 관리 <개정>
 - 5. 선거인 명부 확정 및 관리 <개정>
 - 6. 당선자의 결정 및 공고
 - 7.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 8.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 ② 연회 선관위는 선관위의 관할하에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③ 선관위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607】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 1명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각 연회 선관위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로 한다.
- ③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선출하며,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서기 : 선거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선거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1608】 제8조(간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선관위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예비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 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의분과, 관리분과,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
 - 1.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2. 관리분과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선거 공고,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투표소 설치 등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 3. 홍보분과위원회는 선거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운영,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의 심의, 제작, 배포업무를 주관한다.

【1610】 제10조(상임위원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둔다.
- ② 상임위원회는 선관위의 위원장과 서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위원회는 선관위가 위임한 사항과 선관위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고, 선관위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정리한다.

【1611】 제11조(의결 정족수)

- ① 선관위,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선관위가 확정된 후보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 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회 재정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개시 20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2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 ③ 예비 등록 마감 후 180일째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한다. <개정>

【1613】 제13조(피선거권)

- 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은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 ③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예비후보 등록 전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 ⑤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이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처벌된 범과(일반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개정>
- ⑥ 국가 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 ⑦ 「교리와 장정」, 교회건축 등 감리회, 교회, 교인,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를 보호하려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 <개정>
- ⑧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 ⑨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선거 당해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으면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 ⑩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 ⑪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 ⑫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 ⑬ 대한민국 국적 외에 2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미주자치연회는 제외)
- ⑭ 선거공보에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다. <신설>

【1614】 제14조(선거권)

-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

- ① 각 연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를 결정하여 선거 90일 전에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 ② 선관위는 선거 50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선거 30일 전까지 확정한다. <개정>
-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616】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사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예비후보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①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통 <개정>
- ② 이력서(사진첨부) 1통 <개정>
- ③ 명함판 사진 파일 <개정>
- ④ 경력증명서(소속연회 발행) 1통 <개정>
- 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개정>
- ⑥ 선거공보 원고 1통(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감독 후보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는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 ⑦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1통 <개정>
- ⑧ 감독 후보자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자는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 완납 확인서 각 1통 <개정>
- ⑨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1통 <개정>
- ⑩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1통(연회 발행) <개정>
- ⑪ 범죄경력조회확인(실효된 형 포함)은 예비후보 등록 당일 선거관리위원장과 심의분과위원장의 입회하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한다. 다만,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5항과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⑫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 1통 <개정>
- ⑬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1통 <개정>
- ⑭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1통 <개정>
- ⑮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 ⑯ 정회원 연수 이수 확인서 1통 <신설>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예비등록 한 후보자들의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 ② 심사기간 동안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요건의 보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 ③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보고한다. <개정>
- ④ 선관위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일 150일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개정>
- ⑤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 ① 선거일 150일 전에 후보자 명단과 기호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 ②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문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 ③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제 5 장 선거운동

【1620】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621】 제21조(선거감시단)

- ①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선거감시원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한다.
- ②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선거감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선관위가 선거감시원을 인준한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감시원이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1622】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 ① 감독회장, 본부 각 국 임직원과 도서출판kmc 임직원 <개정>
- ② 감독,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 ③ 감사
- ④ 선거관리위원
- ⑤ 지방회급 이상 자치단체장

【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 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 ② 후보자 확정 이후에 선거운동을 위한 동영상(7분 이내)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해당 연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 등 개인 SNS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동영상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게시한다. <개정>
- ③ 후보자는 제2항의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에 대하여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횟수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④ 선거공보, 동영상 및 기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는 연회, 지방회, 연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 총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에서 주최하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합동정책 발표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 ⑥ 연회 감독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 주최로 1회, 각 지방회(연합진행 가능) 주최로 1회 진행하고, 연회에 소속된 자치기관(장로회 포함)별로 1회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정>
- ⑦ 감독회장 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가 주최하여 연회 권역별로 실시하며 각 연회와 총회에 소속된 자치기관(장로회 포함)별로 1회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다. <신설>
- ⑧ 합동정책 발표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주최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1624】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 후보자 예비등록 이전에 각 항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신설>

- ① 출마를 공식화하여 활동하는 행위(SNS 활동 포함)
- ② 선거캠프를 결성하는 행위
- ③ 사적 모임을 주선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 행위
- ④ 예비후보 등록 2년 전부터 위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는 후보자 등록 심의를 거쳐서 최종후보에서 제외한다.

【1625】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 전(당해연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 시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개정>
-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장로회 포함),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의 통상적인 행위를 제외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개정>
- ⑤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 ⑥ 선거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 후보자 소속교회 교인, 관련 당사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
-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평신도 자치단체(장로회 포함) 행사가 아닌 후보자의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개정>
-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 ⑪ 후보 등록 후 사퇴하거나 하여,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행위
- ⑫ 후보자들이 담합 또는 연대하는 행위
- ⑬ 예배, 수련회, 부흥회, 임원회, 기도회, 기타 공적 행사에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행위 외에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는 행위 <개정>
- ⑭ 선거 당일에 차량(비용 포함), 교통비,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
- ⑮ 야간 선거운동 제한 : 음성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한다.

【1626】 제26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 ①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권자는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장 투표와 개표

【1627】 제27조(투표소)

- ①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각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제주도에 투표분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 ② 투표소에는 감독 선거 투표함과 감독회장 선거 투표함의 색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 ③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를 개시하기 전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봉한다.

【1628】 제28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 제○○회 총회 감독 선거, 감독회장 선거라고 기재한다.
- ②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별하게 한다.
-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 ④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1629】 제29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1630】 제30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투표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1631】 제31조(개표)

- 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장소에서 즉시 개표한다.
- ② 투표와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관리한다. 다만,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와 개표위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③ 개표한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관리하에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1632】 제32조(무효표)

- ①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 1. 선관위가 제작한 용지가 아닌 것
 - 2. 선관위 직인과 위원장 날인이 없는 것
 - 3.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 5. 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은 것
 - 6. 기표가 없거나 여러 난에 기표된 것
 - 7. 문자나 기호가 기재된 것
 - 8. 다른 투표함에 넣은 것
- ② 무효표는 선관위가 판정한다.

【1633】 제33조(투표와 개표의 관리)

- ① 투표와 개표는 각 연회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하고 선관위가 투표절차와 개표절차를 관리한다.
- ②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소나 개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1명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 ④ 선거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 ⑤ 참관인이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때에는 참관인을 표시하는 표찰을 착용해야 한다.

【1634】 제34조(전자투표) <신설>

- ①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선거권자에게 개인별로 보안인증을 실시하여 1명 1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 ③ 투표시간은 선거일 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 ④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 ⑤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른다.

【1635】 제35조(해외거주자 투표) <개정>

- ① 해외(선교)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의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의 감독회장 선거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 ②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 ③ 전자투표는 선거일 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신설>
- ④ 해외거주자 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제 7 장 보 칙

【1636】 제36조(보궐선거)

- ①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 ②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637】 제37조(재정)

-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 ②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 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⑤ 선거비용을 결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개정>

- ⑥ 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행정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

【1638】 제38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 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고소, 고발권자 또는 해당 의회 선거권자 또는 후보자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당사자 이외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선거가 종료된 30일 이후에는 고소, 고발할 수 없다. <개정>
-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정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 ③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1639】 제39조(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처리)

- ① 해당 의회 선거권자와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 ②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재판법 제2장 행정 재판법에 의하여 재판한다.
- ③ 위 제1항의 당사자만(후보자 포함) 사회법에 제소할 수 있고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640】 제40조(벌칙처벌)

- ①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나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회원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 <개정>
- ②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나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 ③ 선거 중립 의무자가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7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정직과 5년 이하의 모든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 ④ 선거에 관하여 선관위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중도 사퇴나 후보담합 등, 다른 후보 지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 ⑥ 당선자가 선거일 당일과 취임 전에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 ⑦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⑧ 당선자가 취임 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유보한다.
- ⑨ 감독·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
- ⑩ 후보자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각종 매체란 각종 유인물 배포, 공공게시판 게재, 전자메일 및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말한다.
- ⑪ 이 법 제37조(재정) 제6항의 소송비용을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

부 칙 (2021. 10. 27)

【165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

제1조(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시행세칙은 선거법 【1606】 제6조(관장사항) 제3항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회 선관위) 【1604】 제4조 관련

- ① 연회 선관위는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서기는 연회 선관위의 회의 내용과 사무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뒤, 회의 직후 선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회 선관위에 제출한다.
- ③ 미주자치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를 관리하되,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는 총회 선관위의 지휘를 받는다.

제3조(분과위원회)

- ① 【1607】 제7조 제3항 분과위원장 선출은 출신 학교, 소속 연회, 교역자와 평신도가 안배되도록 고려한다.
- ② 각 분과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비중, 선거관리위원들의 희망 등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배정하되, 감독회장이 선임한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은 심의분과위원으로 배정한다.

제4조(피선거권)

- ① 【1613】 제13조 제3항 예비후보 등록 전 2개월 이내와 제5항, 제6항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1613】 제13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해당하는 이는 해당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권) 【1614】 제14조 관련

- ① 【1614】 제14조 제1항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란 연회 시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목사 안수받는 이부터로 한다.
- ② 연회시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목사 안수자를 포함하며, 유학·휴직·미파·은퇴자를 제외한 교역자를 선거권자로 선출한다.
- ③ 평신도 선거권자는 각 호 순서로 선출한다.
 1. 연회 회원(총회대표, 연회실행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장, 장로)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 연장자순
 3. 장로가 없을 시 교역자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교회의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해당교회별로 1명)

4.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5. 위 1~4호 선출시 여성 15%를 유지해서 선출한다.

제6조(선거인 명부)

- ① 【1615】 제15조 2항 이의 신청 결과로 선거권자가 변동이 있더라도 별도의 동수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7조(후보자의 등록)

- ① 【1617】 제17조 제3항 명함판 사진, 제5항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등록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부받은 것으로 한다.
- ② 【1617】 제17조 제8항의 각종 부담금은 【802】 제2조(정의)에 따른 본부, 연회, 지방회, 은급부담금이고 【807】 제7조(부담금의 납입)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1617】 제17조 제13항의 건강진단서는 대학병원(정신과 포함)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④ 【1617】 제17조 제15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 서류는 구역회회의록 중 예·결산서, 통계표 사본을 말하며, 감독 회장 후보자는 4년간의, 연회감독 후보자는 2년간의 위 각 서류를 제출한다.
- ⑤ 후보자의 등록은 공고된 기간 내에 제출하되 등록 마감은 마감일 16시까지로 하되,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16시까지 입장한 경우에도 등록 마감 시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제8조 (후보자 등록 심의) 【1618】 제18조 관련

- ①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공고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 ② 심의분과위는 예비후보자 제출서류와 자격 여부를 심의하여 각 심사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 ③ 등록이 확정된 후보자들은 기호추첨을 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의 자격 여부는 재적 2/3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결정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 ⑤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총회와 연회본부 등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선거감시업무)

- ① 【1621】 제21조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선관위가 실시하는 선거감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선거감시원은 선거권자 중에 추천한다.
- ③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는 접수된 사실이 범과에 해당하는 확실한 증거

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관리분과위원회는 위반의 경, 중을 따라 경고, 재경고, 또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재적 2/3 참석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의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선거운동) 【1623】 제23조 관련

- ① 개인 홍보 명함(9cm×5cm)을 제작 배포할 수 있고 양면에 선거공보에 기재한 내용을 쓸 수 있다. 명함은 홍보분과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은 각각 1일 1회 할 수 있다.
- ③ 합동정책발표회는 해당 연회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감독회장 정책발표회는 각 연회감독 합동정책발표회와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미주자치연회는 선거공보로 대신 할 수 있다.
- ⑤ 선거운동원은 감독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연회별로 각 2명, 감독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3명을 둘 수 있다.

제11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1625】 제25조 관련

- ① 【1625】 제25조 제2항 금품제공과 제4항 기부금 제공 액수는 다과(多寡)를 묻지 않는다.
- ② 제3항의 부조 및 화환 금액은 1건당 10만원 이하로 하고, 제4항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교본부, 자치단체(장로회 포함)의 광고(1건당 A4전면, 100만원 이하)와 화환(1건당 10만원 이하)은 허용한다.
- ③ 신문, 잡지 등 매스컴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은 제5항의 간행물 배포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제10항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같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불법 선거운동을 의미하며,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단순한 여론조사는 허용한다.
- ⑤ 감독 후보는 해당연회, 감독회장 후보는 전국에서 설교나 세미나 강사를 초청받거나 초청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12조 (해외거주자투표) 【1635】 제35조 관련

- ① 해외선거권자의 선거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 ② 해외선거권자는 선거참여를 신청한 경우에만 전자 또는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
- ③ 전자투표시 전자문서인증 후 투표를 한다.
- ④ 전자투표 업체는 선관위에서 선정한다.

제13조 (재정)

- ① 【1637】 제37조 제3항 선관위가 선거법에 따라 고발(피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

비용과 선관위 임기 종료 후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1회 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선거에 대한 예산(추경 예산 포함) 및 결산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로 확정하며, 예산의 집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감독하며 회계를 둘 수 있다. 또한, 본부 내규규정에 준하여 집행하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③ 결산 후 남은 금액은 차기 선관위 운영을 위해 차용하고 선거 당해연도 후보등록금 입금 즉시 반환하여 【1637】 제37조 제5항에 의거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④ 연회선관위 활동비는 소정의 양식(회의소집공문, 회의록) 제출 시 본부 내규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 총회 감독회장 후보자의 등록금은 5,000만원, 각 연회감독 후보자의 등록금은 3,000만원으로 정한다.

제14조 (선거법 위반의 처리) 【1638】 제38조

① 교역자나 교인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고소, 고발하였다가 제1항에 의하여 반려받고도 위반 내용이나 증거를 추가함이 없이 같은 내용의 고소, 고발을 반복하여 선거법 제25조 제7항 허위사실 유포, 음해, 비방에 해당하거나 무고죄의 가능성 있는 경우 선관위의 의결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 선관위는 감독회장에게 고발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을 받은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칙 (2022. 2. 10)

① 이 선거법 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동정책발표회 안내

1. 연회 주최 합동정책발표회는 **1회 필수**입니다.
2. 지방회 주최 합동정책발표회 **1회 필수** (연합진행 가능)입니다.
3. 자치기관(장로회 포함) 주최 합동정책발표회 **1회 선택** (연합진행 가능)입니다.
4. 합동정책발표회는 **연회선관위에서 승인 후 시행** 가능합니다.
5. 예산은 주최 측에서 부담 합니다.
6. 합동정책발표회 일정

연회	연번	주최	일시	장소
서울	1	서울연회	5월 11일(수) 14:00	종교교회
	2	동대문, 종량, 성동광진	6월 12일(일) 16:00	금란교회
	3	은평, 은평동, 마포	6월 26일(일) 16:00	은평교회
	4	성북, 도봉, 강북, 노원	7월 03일(일) 16:00	미아동교회
	5	종로, 중구용산, 서대문	7월 17일(일) 16:00	아현교회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1	동부연회	8월 06일(토) 14:00	큰나무교회(학성교회)
	2	철원동, 서지방	7월 05일(화) 14:00	신철원교회
	3	동해삼척, 태백지방	7월 07일(목) 14:00	삼척큰빛교회
	4	횡성, 흥천동, 서지방	7월 11일(일) 14:00	횡성교회
	5	영월, 새영월지방	7월 12일(화) 14:00	영월대교회
	6	강릉남, 북지방	7월 14일(목) 14:00	강릉중앙교회
	7	춘천동, 서, 남, 북지방	7월 18일(일) 14:00	춘천중앙교회
	8	속초남, 북, 인제지방	7월 21일(목) 14:00	속초조양교회
	9	평창, 정선지방	7월 25일(일) 14:00	평창중앙교회
	10	원주동, 서, 남지방	7월 26일(화) 14:00	원주삼천교회
충북	1	충북연회	8월 30일(화) 14:00	청주좋은교회
	2	제천동, 서, 단양동, 남지방	6월 02일(목) 14:00	제천남부교회
	3	청주서, 남, 북지방	6월 04일(토) 14:00	청주에덴교회
	4	음성, 음성서, 진천, 괴산	6월 09일(목) 14:00	음성교회
	5	영동지방	6월 18일(토) 14:00	행복한교회
	6	충주동, 서지방	6월 25일(토) 14:00	충주제일교회
남부				
충청	1	충청연회	8월 02일(화) 14:00	천안남산교회
	2	천안, 아산지역	6월 28일(화) 14:00	온천제일교회
	3	당진, 서산, 태안지역	7월 05일(화) 14:00	서산중앙교회
	4	예산, 홍성, 대천지역	7월 12일(화) 14:00	홍성제일교회
삼남				
호남 특별	1	호남특별연회	5월 27일(금) 14:00	아펜젤러기념교회
	2	전북지역 지방회(연합)	6월 13일(일) 14:00	전주노송교회
	3	전남지역 지방회(연합)	6월 23일(목) 14:00	순천중앙교회
	4	자치단체(장로회포함)	7월 04일(일) 14:00	미정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 감시원 명단

연회	지방	교회	감시원
서울	성북	맑은샘	최성철 목사
	성동광진	꽃재	이선중 장로
	마포	은강	노명재 목사
	마포	은빛	이기서 장로
	동대문	여러분의	정필교 목사
	도봉	예수마을	이희원 장로
서울남	잠실	한길	임예길 목사
	송파	하늘산성	김대현 장로
	영등포	여의도	이종춘 목사
	구로	구로동	엄윤희 장로
중부	부평서	창천	한영종 목사
	파주	은혜	방준영 장로
	파주	하나로중앙	이재범 목사
	부평동	선일	현관섭 장로
	일산서	시들지않는나무	권태봉 목사
	부평서	산곡	김종훈 장로
경기	남양	천천	박정규 목사
	안산동	만족	송용섭 장로
	수원팔달	삼일상동	이기석 목사
	장안	북수원	호정기 장로
동부	새영월	후포	양광수 목사
	원주서	우산	임영규 장로
	속초남	광정	박재성 목사
	강릉북	소망	연병익 장로
충북	진천	신생	박종석 목사
	충주서	동부	박한순 장로
	청주서	형제	박민경 목사
	충주동	중원	한연기 장로
남부	대전서북	밀레니엄	류대환 목사
	대전유성	힐탑	이장호 장로
	공주	공주제일	민경덕 목사
	공주	공주제일	김양신 장로
	중부	안디옥	이용기 목사
	중부	중촌	한우동 장로
충청	대전서	은포	이희중 목사
	천안동	온누리	서상교 장로
	예산서	불원	장영욱 목사
	천안	하늘샘	최민태 장로
	대전남	마양	김연수 목사
	당진동	상록수	정경윤 장로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 운동원 명단

연회	후보자	지방	교회	운동원
서울	1번 김성복	성북	월곡	최복규 목사
		성동광진	화양	최상훈 목사
		성동광진	꽃재	윤문근 장로
	2번 표순환	종로	옥인제일	박찬수 목사
		중구용산	만리현	맹수영 장로
		중구용산	이촌동	음진우 목사
	3번 이용원	서대문	성은	강현종 목사
		강북	우이	양승용 장로
		도봉	영천	정성일 장로
서울남	1번 유병용	송파	평화	최영호 목사
		관악	총성	왕종운 목사
		관악서	신애제일	윤재영 장로
	2번 채성기	금천	성광	조완석 목사
		관악서	두드림	조민환 장로
		서초	종로	임영규 장로
중부	1번 박찬일	강화동	서문안	고광덕 목사
		부평동	예신	서도원 목사
		부천북	내동	천성환 목사
	2번 김찬호	부천서	예수마을	고현석 목사
		남동	예향	신현관 장로
		일산동	선교대명	조윤주 장로
	3번 유학열	일산서	온누리	김승녕 목사
		부천북	드림	양희만 목사
		인천북	효성중앙	김민경 장로
경기	1번 송광섭	수원장안	화목	홍경유 목사
		남양	원천	곽일석 목사
		동탄	은성	이신덕 목사
	2번 박장규	동탄	신광	고인준 목사
		안산대부	대부제일	이원철 목사
		동탄	동탄	손진성 장로

연회	후보자	지방	교회	운동원
동부	1번 김영민	속초남	현남중앙	김진형 목사
		강릉남	강릉예향	김명섭 목사
		강릉남	강남	박종서 장로
	2번 손학균	강릉북	강릉선교	이천선 목사
		새영월	주천	김도권 목사
		횡성	정금	최관순 목사
충북	1번 백종준	청주남	시온	문성오 목사
		음성서	신양	최상열 장로
		충주서	은혜	이상열 장로
	2번 박정민	충주동	문산	김응귀 목사
		청주서	사도	안영호 장로
		제천서	봉양	김승제 장로
남부	1번 전석범	대전중앙	은혜로	송달호 목사
		대전대덕	살롬	허준환 장로
		대전동	가양	임광순 장로
	2번 윤애근	공주	공주제일	최증조 장로
		공주	공주제일	이성옥 장로
		공주	공주제일	김인순 장로
	3번 김동현	대전서	한사랑	조성철 목사
		대전동	제자들	김광순 장로
		대전동	제자들	임호연 장로
충청	1번 박인호	당진	당진제일	김재동 목사
		당진	당진해나	서종원 목사
		대천서	풍정	배유신 목사
	2번 김성선	예산	예림	이상희 목사
		홍주	홍주제일	정진원 목사
		예산서	삼성	최승세 목사
	3번 엄재용	온양서	명성	김청환 목사
		당진	송매	김종필 목사
		서산동	임마누엘	최상준 목사

연회 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연회	직책	이름	전화번호
서울	위원장	조규식 목사	010-5477-4793
	서 기	강경천 장로	010-2278-2855
	위 원	김영수 목사	010-9991-0065
		최병천 장로	010-4228-8533
서울남	위원장	태동화 목사	010-6529-1324
	서 기	김명동 장로	010-4303-7088
	위 원	오신석 목사	010-9752-9991
		안병선 장로	010-3894-0891
중부	위원장	이승근 목사	010-2865-9416
	서 기	사재신 장로	010-4761-9925
	위 원	황규희 목사	010-3268-9864
		문영배 장로	010-5266-4730
경기	위원장	원영희 목사	010-2563-3497
	서 기	한명석 장로	010-3763-4718
	위 원	원영오 목사	010-4746-0505
		박래영 장로	010-7277-0496
중앙	위원장	최기혁 목사	010-3748-7910
	서 기	이승휘 장로	010-8011-1315
	위 원	이건영 목사	010-8229-5653
		양은석 장로	010-8775-7967
동부	위원장	고문석 목사	010-2395-7244
	서 기	최준호 장로	010-2775-3647
	위 원	안복기 목사	010-5377-9192
		허선영 장로	010-6289-9195
충북	위원장	황건구 목사	010-4899-1237
	서 기	정석훈 장로	010-5492-8220
	위 원	조두성 목사	010-5460-1691
		박문서 장로	010-5459-9836
남부	위원장	이재철 목사	010-4420-7567
	서 기	이영복 장로	010-5409-9083
	위 원	김 현 목사	010-4222-0425
		곽상길 장로	010-7688-8878
충청	위원장	안병건 목사	010-2885-8740
	서 기	박종무 장로	010-7427-0804
	위 원	박성식 목사	010-3316-6741
		황의도 장로	010-5433-0155
삼남	위원장	박준선 목사	010-2757-2540
	서 기	하창구 장로	010-5222-6921
	위 원	백종석 목사	010-3861-3210
		이종한 장로	010-2557-8080
호남특별	위원장	김성용 목사	010-3682-9125
	서 기	여태호 장로	010-5654-4256
	위 원	유호경 목사	010-8003-0129
		김정만 장로	010-3637-4400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위원장 : 최승호 목사
 서 기 : 문영배 장로
 변호사 : 송인규 장로
 간 사 : 이홍규 목사

1. 연회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연회	위원장(교)	서기(평)	위원(교, 평)
서울	조규식	강경천	김영수 최병천
서울남	태동화	김명동	오신석 안병선
중부	이승근	사재신	황규희 문영배
경기	원영희	한명석	원영오 박래영
중앙	최기혁	이승휘	이건영 양은석
동부	고문석	최준호	안복기 허선영
충북	황건구	정석훈	조두성 박문서
남부	이재철	이영복	김 현 곽상길
충청	안병건	박종무	박성식 황의도
삼남	박준선	하창구	백종석 이종한
호남특별	김성용	여태호	유호경, 김정만

2. 분과위원회 조직

분과	위원장	서기	위원
심의분과 위원회	이건영	이종한	(교) 조규식 태동화 황규희 원영희 안병건 박준선
			(평) 최병천 한명석 최준호 박문서 곽상길 김정만 송인규
관리분과 위원회	이승근	김명동	(교) 김영수 원영오 안복기 조두성 이재철 김성용
			(평) 문영배 이승휘 허선영 정석훈 이영복 황의도 하창구
홍보분과 위원회	황건구	박종무	(교) 오신석 최기혁 고문석 김 현 박성식 백종석 유호경
			(평) 강경천 안병선 사재신 박래영 양은석 여태호